

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2106
-----------	------

2021년 2월 25일  
교 통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이은주 의원 외 9인

나. 제안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1년 2월 2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은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

크 미착용 등 대중교통 내 위생,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. 또한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

#### 나. 주요골자

- 대중교통운영자는 위생, 방역등의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9 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철도안전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0. 29. ~ 11. 5.

- 제출의견 : 없음

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<sup>1)</sup>

### 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관련, 마스크 미착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
- 대중교통운영자가 대중교통의 위생 및 방역에 영향을 주는 등의 경우 운송거부 및 하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조례 내용에 원안 동의함

---

1) 교통정책과-1873호(2021.1.29.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 내의 위생·방역에 영향을 주거나 감염병 시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및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대중교통운영자<sup>2)</sup>가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'20년 8월 12일에 개정<sup>3)</sup>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
- 서울시 버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 현실

2)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대중교통운영자를 “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·관리하는 자”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택시를 제외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, 서울교통공사, 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, 우이신설경전철(주)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

3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<법률 제17475호, 2020. 8. 12, 일부개정, 시행>

을 반영하여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9조4)와 시행규칙 제30조5)에 따른 「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」 6) 및 「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」 7)을 변경8)하였고, 서울교통공사에서는 「도시철도법」 제32조9)에 따른 「여객운송약관」 10)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11)하여 마스크 미착용 여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 근거를 이미 마련하는 등

##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12) 등을 포함한 교통수단 내

4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(운송약관)

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5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(운송약관의 기재사항)

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8.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6)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2조(운송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5. 비상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사전 고지하였으나,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<신설>

7)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1조(운송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.

5. 비상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사전 고지하였으나,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<신설>

8)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통지 : 버스정책과-15198호('20.5.22.)

9) 도시철도법 제32조(도시철도운송약관)

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,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0) 여객운송약관 제6조(여객운송의 조정)

③ 서울교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·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,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

16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<신설>

11)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제2020-3회('20.5.29.) 제11호(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규정안) : 수정의결  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하여 운송거정 및 퇴거조치 추가 반영

12) 마스크,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?... 직접 실험해보니 : 한국경제('20.10.23.)

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위생지침을 따르는 것은  
여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

- 또한 '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<sup>13)</sup>에서는 여객  
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에 대해 “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  
는 정당하며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”한다고 행정심판을 결정함
  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 
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송거부와 여객하차에  
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 
특성과 선량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  
된다 할 것임

---

- 바이러스 흡입량 80~90%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 보도

13)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: '20.10.13.

- 국민권익위, “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” 행정심판 결정

- 중앙행심위,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..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
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9조(대중교통보건위생) (생   략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9조(대중교통보건위생) ① (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 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 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 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 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, 방 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</u></li> <li>2. <u>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상 요 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 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 하는 행위</u></li> <li>3. <u>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 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</u></li> <li>4. <u>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</u></li> </ol>